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7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서왕진 · 박은정 · 정춘생  
백선희 · 이해민 · 김준형  
김선민 · 신장식 · 황운하  
차규근 · 강경숙 · 김재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범죄에 공한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과거 전두환 일가 은닉 재산 추정 논란, 대우그룹 임직원의 재산해외도피 등으로 23조원 이상의 추정금 미집행 사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병언 일가 재산 몰수·추정 논란 등을 거쳐 추정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범죄 혐의 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 불특정, 기소전후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몰수·추정이 불가능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이와 같은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있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와 수익 간 관련성이 확정될 경우 기소없이 형사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임.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추징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 가능하며, 범죄수익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또한 독립몰수·추징의 적용 대상(안 제14조 신설), 관할 법원(안 제15조 신설), 청구의 절차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독립몰수·추징에 대한 제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이러한 독립몰수·추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흉악 범죄인들의 수익에 대한 신속한 추징·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범죄·부패 근절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에서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몰수”란 주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권리자”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2 중 “추징은”을 “추징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에 관한 추징은”으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

#### 4호의 부패범죄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립몰수·추징) ①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49조 본문에 불구하고 몰수를 할 수 있다.

1.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2.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하여 보호처분하는 경우
3.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범죄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죄행위자·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의 경우
6. 범죄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7.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
8.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
9.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독립몰수·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산권자 사이에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에 의하되 주된 재산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한다.

⑤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제16조(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기타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보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몰수·추정의 심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된다.

제21조(독립몰수·추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몰수명령 또는 추정명령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몰수대상재산에 대한 참가인, 기타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경우에는 독립몰수 또는 독립추정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써 한다.

제22조(즉시항고)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심절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독립몰수·추징명령을 받은 자, 기타 권리자는 확정된 독립몰수·추징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청구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독립몰수·추징에 관한 재판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될 때
2. 독립몰수·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② 제1항제1호의 청구는 청구인이 최종적인 독립몰수·추징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제1항제2호의 청구는 무죄의 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1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독립몰수·추징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행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청구는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독립몰수·추징 재판의 효력) 독립몰수·추징명령 및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몰수대상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귀책사유 없이 몰수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권리에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1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독립몰수, 독립추징과 이에 대한 제3자 참가, 보전절차 및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위임규정) 독립몰수·추징 청구의 절차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독립몰수”란 주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u></p> <p>7. <u>“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u></p> <p>8. <u>“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u></p> <p>9. <u>“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u></p> <p>10. <u>“권리자”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다</p>	<p>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p>

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 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생략)

1. ~ 2. (생략)

<신설>

<신설>

-----  
 -----  
 -----  
 -----  
 -----  
 -----  
 -----  
 -----  
 -----추징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 재산에 관한 추징은 -----  
 -----.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패범죄

제14조(독립몰수·추징) ①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49조 본문에 불구하고 몰수를 할 수 있다.

1. 기소유에 처분의 경우
  2.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하여 보호처분하는 경우
  3.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범죄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죄행위자·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경우
  6. 범죄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7.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
  8.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
  9.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③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독립몰수·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산권자 사이에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에 의하되 주된 재산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한다.

⑤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신 설>

제16조(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  
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기타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  
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  
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기타 송달 방법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신 설>

제1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

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보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독립몰수·추정의 심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신 설>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된다.

제21조(독립몰수·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몰수 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몰수대상재산에 대한 참가인, 기타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 설>

<신 설>

청구를 각하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경우에는 독립몰수 또는 독립추징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써 한다.

제22조(즉시항고)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심절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독립몰수·추징명령을 받은 자, 기타 권리자는 확정된 독립몰수·추징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청구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독립몰수·추징에 관한 재판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될 때

2. 독립몰수·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② 제1항제1호의 청구는 청구인이 최종적인 독립몰수·추징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제1항제2호의 청구는 무죄의 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1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독립몰수·추징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행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청구는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독립몰수·추징 재판의 효력) 독립몰수·추징명령 및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몰수대상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귀책사유 없이 몰수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권리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5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독립몰수, 독립추징과  
이에 대한 제3자 참가, 보전절  
차 및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제  
1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  
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독립몰수절  
차, 독립추징절차 및 그 불복방  
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  
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위임규정) 독립몰수·추징  
청구의 절차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